공제계약신청서

1. 업체 현황

법인명(상호)	아가페라이프(주)	대 표 자	이 의 광
법인등록번호	180111-0203975	사업자등록번호	606-8161124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록 번 호	부산-2010-6호	전 화 번 호	1644-0400
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4번길 4, 2층(대연동)			
홈 페 이 지	http://www.agapelife.co.kr/	팩 스 번 호	051-305-3907
설 립 일	1996년 04월 26일	자 본 금	20억원

공제계약 담 당 자	성 명	이 은 비	전화번호	1644-0400
	직 위	과 장	E-mail	dmslq97@naver.com

2. 공제한도 신청(보증내용)

(단위 : 천 원)

	, _ ,
선수금 보증한도 신청금액	5,787,130
신용평가율 (%)	88%
①산정(필요) 담보금액	2,389,663
②기 납부담보금액(출자포함)	2,303,212
③납입예상 담보금액 (①-②)	86,451

※ 담보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463537-01-012908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을 신청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신청인 : 아가페라이프(주) (법인인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ver-20250530

공제계약서(共濟契約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아가테라이프(주)** (이하 "공제계약자"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 ① 이 계약은 조합이 공제계약자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계약자와 선 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계약에 조합의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선수금 신고 업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 【공제계약 기간 및 공제한도액】

- ① 이 계약의 공제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1년간)로 한다.
- ② 이 계약의 공제한도액(「공제규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한도액을 말한다) 은 금<u>약백양성입억청청사백하십</u>숙만일천 원(₩ 11.5**/**₩, 261, 000 #)으로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에 따라 매 분기 초 공제한도 액을 조합에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공제한도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합에 공제한도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제계약의 체결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 적격 심사 결과 공제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제계약자와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제5조 제1항 각호의 서류
 - 2. 공제계약자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 현황
- ②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공제계약 적격 심사를 거쳐 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조합에 알리고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경영권 이전 또는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수도
- 2. 합병, 분할
- 3. 영업의 양수도
- 4. 중요자산의 처분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⑤ 공제계약자는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하는 사유 발생일 전에 조합과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공제계약자 또는 이 계약을 승계한 상조회사는 조합이 이 계약 계속 여부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조합의 공제계약자가 아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조합에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공제계약 해지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중지할 수 있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공제계약자가 유예기간까지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못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공제계약자가 선수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4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3.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와 공모하여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가)압류 등 법 적 절차가 진행되어 조합경영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 5. 공제계약자가 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현황을 1개월 이상 전산 입력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전산 입력한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8. 공제계약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



- 9. 조합이「공제규정」제11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공제계약의 계속 여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1.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요구사항 및 「공 제규정」제12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 공제계약자가 법, 조합의 관련 규정, 공제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 13. 「공제규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자를 조사한 결과 공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 15. 공제계약자가 기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지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발급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금융결제 원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공제계약자와 공제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제(控除)]

조합은 공제계약자(「공제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이미 납부한 출자금, 담보 등 정산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소비자피해보상금, 법무비용,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분담금, 기타 손해금 등을 공제(控除)하여 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충당한다.

- 1.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2. 공제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3.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 시 결정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5.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6조【담보】

- ① 공제계약자(이하「공제규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이하"선수금 보전금액"이라 한다)에 상응 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는 출자 금, 현금, 부동산 등으로 제한한다. 단, 최초 공제계약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 담 보제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는 선수금 보전금액에 「공제규정」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금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담보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 종류에 따라 담보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출자증권과 현금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출자금 + 현금)=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출자증 권담보제공 비율) 출자금} ÷ 출자증권담보제공 비율 × 현금담보제공비율] + 출자금
 - 2. 현금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현금) =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현금 담보제공비율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분기 말마다 담보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에게 채권 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추기로 요구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요구내 용 대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조합이 「공제규정」 제6조 제5항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계 약자의 기존 담보 외 추가 담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3.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유관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4. 기타 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⑤ 조합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가 신고하는 예상선수금에 따라 담보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다음 분기까지 반환을 유 보할 수 있다.
- ⑥ 공제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담보금액을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3년 이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담보는 총 담보금(출자금 및 현금 담보)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부동산 담보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60%만을 인정한다.



제7조 【담보물 제공 등】

- ① 공제계약자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조합이「공제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소비자피해보상금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채권(이하"이 계약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계약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금 명목으로 금 이번 사건 학선 가변 학선 가변 학생 기반 상상 1 원(₩ 2.389 1.63 ,935 + 1 이하 이 계약 담보금"이라 한다)을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계약 담보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세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 계약 담보금의 반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 ④ 담보금액에 대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제8조 [연대보증]

- ① 공제계약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피해액(이 계약 구상채권 금액, 법무비용 등) 일체를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될 경우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인 개인의 재산(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 체결과 함께 공제계약자의 대표자와 대주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 기간 중 연대 보증하였던 대 표자와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가 연대보증 의무를 인수(병존적인수)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기간 중 「공제규정」제6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해당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조합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계속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공제계약자가 제1호에 따라 이 계약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 를 하는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천 대표자 및 대주주는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또한,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도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 3.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와 연대보증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 4. 「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해당사유 발생에 따른 공제계약자의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 「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 이로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변제에 대하여 공제계약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⑥ 조합은 연대보증인의 자격 심사과정에서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대표자 및 대주주 외에 다른 임원, 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게 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의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는 「공제규정」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 【공제계약자의 담보금액 반환 등】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조합에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공제계약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담보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하 "상조서비스 행사" 라고 한다)을 완료한 경우
 - 2.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 3.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거나 담보금액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단, 조합은 담보금액을 공제계약자가 새로 계약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 직접 송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와 관련 있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담보금액 반환요청서
 - 2. 담보금액 반환요청 관련 수혜자 명단
 - 3.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상 조서비스 행사 관련 영수증, 서비스 이행확인서 등의 서류 또는 수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
 - 4.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혜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송금내역(단,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0원인경우 이를 증명하는 산출내역)
 - 5. 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였거나 또는 담보금액을 제 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공제료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 [별표 2] 공제료 산출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제료의 합산 금액을 1개월분 공제료로 책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공제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을,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이 300,000원 이하인 경우 300,000원을 공제료로 책정한다.
 - 1. 보증공제료 : 매월 말 기준 누적선수금 × 보증공제료 요율 ÷ 신용평가율
 - 2. 운영공제료 : 조합의 당해연도 지출예산총액/12 × 직전월 '조합원의 보증공제 료'비율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이자 =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 연체요율(20%) × 연체일수 ÷ 365

제11조 (공제관련 비용 등 부담)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 후 공제계약자와 관련한 조합의 공제업무를 위하여 조합이 부담한 변호사 위임비용, 조합이 공제계약자 보고의무의 충실 또는 공제계약자 보고내용의 진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인회계사 위임비용, 조합이 각종 감사, 검사, 실사 등에 지출한 비용, 이 계약에 따른 각종 공고 및 공시 비용, 출장경비 등 제반 필요경비(공제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공제관련 비용"이라 한다)를 부담하기로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이 해지된 후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관련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를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 지급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12조 【공제계약자의 전신시스템 구축】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 함께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 부계약으로 판매한 모든 상품의 선수금 보전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의 내용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조합 전산시스템과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사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환경
 - 2.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조합 전산시스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건별 공제번호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 3.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선수금 보전금액 및 소비자의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조합 전산시스 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환경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 규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운영 외주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

- ① 공제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제3의 외주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조합은 필요할 때 공제계약자의 제3의 외주업체에 공제계약자의 소비자별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보, 선불식 할부계약 판매원별 지급수수료 등 조합의 공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3의 외주업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처리】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피해 가 우려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공제계약 내용의 확인]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 및 담보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6조 【조합 공제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①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이전, 소비자 사이의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공제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제계약자 통보의무】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조합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제계약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3. 공제계약자의 부도, 워크아웃, 회사정리, 파산, 기타 재산 상태가 중대하게 나 빠지거나 기타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의 영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해산, 청산,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담보물의 양도, 기타 공제계약자의 영업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5. 공제계약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 절차가 개시되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 권자에 의한 보전처분 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기관으 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자신의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제계 약자의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의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 8. 공제계약자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제계약자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9.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 및 제재를 받는 경우
- 10. 기타 조합의 법률적인 책임이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 이행과정, 계약의 완료 후에도 어떠한 경우로든 알게 된 조합의 모든 정보(재무상태, 경영자료, 규정 등)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조합의 허락 없이 관련 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공제계약자의 임원, 직원과 그의 지휘 범위 내에 있는 자(피고용자 등 포함),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 또는 공제계약자와 제3 자 사이 분쟁(사실상, 법률상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분 쟁 해결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소변경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의 명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출한 인감을 분실, 멸실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서명 인감의 대조 등】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미리 신고한 서명, 인감 등과 대조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신고사항 등을 처리한 때에는 공제계약자의 서명, 인감에 대한 도용, 위조, 변조,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양도·질권설정 등 금지】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승낙 없이 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및 담보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22조 【공제계약자의 변경】

- ① 공제계약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회원 이전 등)를 제3자에 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제계약의 승계 거부】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를 하는 제3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체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 【공제계약의 무효】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졌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25조 【손해의 조사】

- ①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수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협조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협조 또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조합, 공제계약자,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 【보칙】

-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조합의 예상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공제계약 기간 중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되는 경우 이 계약에서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에 따라 규정한 내용은 개정된 정



관, 공제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조합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 【공제계약자의 동의 및 날인】

공제계약자는 아래 [표] 기재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였기에 인감을 날인한다.

동 의 사 항	인감날인
1.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 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선수금 신고업무지침」을 수령 하였습니까?	
2. 위 1.의 규정, 지침,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공제계약 기간 중 위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까?	



2025 년 6월 2기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이 사 장 (법인인감)

공제계약자(회사명)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행보고 [[바일 4, 2이호 (다면용') 대표이사 이 의 광



공제계약서(共濟契約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아가케라이트(국)** (이하 "공제계약자"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 ① 이 계약은 조합이 공제계약자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 2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계약자와 선 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계약에 조합의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선수금 신고 업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 【공제계약 기간 및 공제한도액】

- ① 이 계약의 공제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1년간)로 한다.
- ② 이 계약의 공제한도액(「공제규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한도액을 말한다) 은 금<u>생백양성 3억 청년 2백 이당한 양선</u> 원(#11、5714、261、000 #)으로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에 따라 매 분기 초 공제한도 액을 조합에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공제한도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합에 공제한도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제계약의 체결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 적격 심사 결과 공제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제계약자와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제5조 제1항 각호의 서류
 - 2. 공제계약자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 현황
- ②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공제계약 적격 심사를 거쳐 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조합에 알리고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3. 영업의 양수도
- 4. 중요자산의 처분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1. 경영권 이전 또는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수도

- ⑤ 공제계약자는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하는 사유 발생일 전에 조합과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공제계약자 또는 이 계약을 승계한 상조회사는 조합이 이 계약 계속 여부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조합의 공제계약자가 아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조합에 신고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조 【공제계약 해지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가 발생하 는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중지할 수 있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했당하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공제계약자가 유예기간까지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하지 아 니하거나 못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공제계약자가 선수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4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3.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와 공모하여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가)압류 등 법 적 절차가 진행되어 조합경영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 5. 공제계약자가 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현황을 1개월 이상 전산 입력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전산 입력한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 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8. 공제계약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



- 9. 조합이 「공제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공제계약의 계속 여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1.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요구사항 및 「공 제규정」제12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 공제계약자가 법, 조합의 관련 규정, 공제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 13. 「공제규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자를 조사한 결과 공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 15. 공제계약자가 기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지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발급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금융결제 원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공제계약자와 공제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제(控除)】

조합은 공제계약자(「공제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이미 납부한 출자금, 담보 등 정산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소비자피해보상금, 법무비용,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분담금, 기타 손해금 등을 공제(控除)하여 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충당한다.

- 1.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2. 공제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3.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 시 결정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5.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6조【담보】

- ① 공제계약자(이하「공제규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이하 "선수금 보전금액"이라 한다)에 상응 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는 출자 금, 현금, 부동산 등으로 제한한다. 단, 최초 공제계약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 담 보제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는 선수금 보전금액에 「공제규정」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금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담보 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 종류에 따라 담보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출자증권과 현금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출자금 + 현금)=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출자증 권담보제공 비율) 출자금} ÷ 출자증권담보제공 비율 × 현금담보제공비율] + 출자금
 - 2. 현금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현금) =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현금 담보제공비율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분기 말마다 담보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에게 채권 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요구내용 대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조합이 「공제규정」 제6조 제5항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계 약자의 기존 담보 외 추가 담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3.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유관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4. 기타 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⑤ 조합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가 신고하는 예상선수금에 따라 담보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다음 분기까지 반환을 유 보할 수 있다.
- ⑥ 공제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담보금액을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3년 이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담보는 총 담보금(출자금 및 현금 담보)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부동산 담보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60%만을 인정한다.



제7조 【담보물 제공 등】

- ① 공제계약자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조합이「공제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소비자피해보상금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채권(이하"이 계약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계약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금 명목으로 금 이상업 학생과 생산 사 원(\(\mathbf{\text{W}}\) 2.389,663,935 # , 이하 "이 계약 담보금"이라 한다)을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계약 담보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세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 계약 담보금의 반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 ④ 담보금액에 대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제8조 [연대보증]

- ① 공제계약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피해액(이 계약 구상채권 금액, 법무비용 등) 일체를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될 경우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인 개인의 재산(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의 한다.
- ③ 이 계약 체결과 함께 공제계약자의 대표자와 대주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 기간 중 연대 보증하였던 대 표자와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가 연대보증 의무를 인수(병존적인수)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기간 중「공제규정」제6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해당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조합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계속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공제계약자가 제1호에 따라 이 계약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 를 하는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또한,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도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 3.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와 연대보증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 4. 「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해당사유 발생에 따른 공제계약자의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 「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 이로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공제계약자가 「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변제에 대하여 공제계약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⑥ 조합은 연대보증인의 자격 심사과정에서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대표자 및 대주주 외에 다른 임원, 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게 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의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는 「공제규정」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 [공제계약자의 담보금액 반환 등]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조합에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공제계약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담보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하 "상조서비스 행사" 라고 한다)을 완료한 경우
 - 2.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 3.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채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거나 담보금액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단, 조합은 담보금액을 공제계약자가 새로 계약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 직접 송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와 관련 있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담보금액 반환요청서
 - 2. 담보금액 반환요청 관련 수혜자 명단
 - 3.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상 조서비스 행사 관련 영수증, 서비스 이행확인서 등의 서류 또는 수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
 - 4.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혜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되 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송금내역(단,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0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산출내역)
 - 5. 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였거나 또는 담보금액을 제 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공제료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 [별표 2] 공제료 산출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제료의 합산 금액을 1개월분 공제료로 책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공제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을,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이 300,000원 이하인 경우 300,000원을 공제료로 책정한다.
- 1. 보증공제료 : 매월 말 기준 누적선수금 x 보증공제료 요율 ÷ 신용평가율
- 2. 운영공제료 : 조합의 당해연도 지출예산총액/12 x 직전월 '조합원의 보증공제 료'비율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이자 =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 연체요율(20%) × 연체일수 ÷ 365

제11조 【공제관련 비용 등 부담】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 후 공제계약자와 관련한 조합의 공제업무를 위하여 조합이 부담한 변호사 위임비용, 조합이 공제계약자 보고의무의 충실 또는 공제계약자 보고내용의 진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인회계사 위임비용, 조합이 각종 감사, 검사, 실사 등에 지출한 비용, 이 계약에 따른 각종 공고 및 공시 비용, 출장경비 등 제반 필요경비(공제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공제관련 비용"이라 한다)를 부담하기로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이 해지된 후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관련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를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 지급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12조 [공제계약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 함께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 부계약으로 판매한 모든 상품의 선수금 보전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의 내용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조합 전산시스템과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사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환경
 - 2.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조합 전산시스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건별 공제번호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 3.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선수금 보전금액 및 소비자의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조합 전산시스 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환경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 규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운영 외주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

- ① 공제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제3의 외주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조합은 필요할 때 공제계약자의 제3의 외주업체에 공제계약자의 소비자별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보, 선불식 할부계약 판매원별 지급수수료 등 조합의 공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3의 외주업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 붙이행에 따른 법적 처리】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공제계약 내용의 확인】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 및 담보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6조 【조합 공제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①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의 선수군 납입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 · 해제 · 이전, 소비자 사이의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공제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제계약자 통보의무】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조합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제계약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3. 공제계약자의 부도, 워크아웃, 회사정리, 파산, 기타 재산 상태가 중대하게 나 빠지거나 기타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의 영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해산, 청산,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 도, 담보물의 양도, 기타 공제계약자의 영업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5. 공제계약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 절차가 개시되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 권자에 의한 보전처분 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기관으 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자신의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제계 약자의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의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 8. 공제계약자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제계약자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9.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 및 제재를 받는 경우
- 10. 기타 조합의 법률적인 책임이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 이행과정, 계약의 완료 후에도 어떠한 경우로든 알게 된 조합의 모든 정보(재무상태, 경영자료, 규정 등)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조합의 허락 없이 관련 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공제계약자의 임원, 직원과 그의 지휘 범위 내에 있는 자(피고용자 등 포함).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 또는 공제계약자와 제3 자 사이 분쟁(사실상, 법률상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분 쟁 해결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소변경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의 명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 는 5영업일 이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출한 인감을 분실, 멸실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서명 인감의 대조 등】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미리 신고한 서명, 인감 등과 대조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신고사항 등을 처리한 때에는 공제계약자의 서명, 인감에 대한 도용, 위조, 변조,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양도·질권설정 등 금지】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승낙 없이 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및 담보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22조 【공제계약자의 변경】

- ① 공제계약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회원 이전 등)를 제3자에 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제계약의 승계 거부】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를 하는 제3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체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 【공제계약의 무효】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졌을 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25조 【손해의 조사】

- ①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수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협조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협조 또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조합, 공제계약자,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 【보칙】

-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조합의 예상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공제계약 기간 중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되는 경우 이 계약에서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에 따라 규정한 내용은 개정된 정

관, 공제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조합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 [공제계약자의 동의 및 날인]

공제계약자는 아래 [표] 기재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였기에 인감을 날인한다.

동 의 사 항	인감날인
1.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 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선수금 신고업무지침」을 수령 하였습니까?	
2. 위 1.의 규정, 지침,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율 들었습니까?	
3. 공제계약 기간 중 위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까?	



2025 년 6월 2기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이 사 장 (법인인감)

공제계약자(회사명)

주 소: 박반학력시 날구 유엔행성 14년 4, 20년 (대연동) 대표이사 이 의 광 (범인인참



담보 제공 명세서

<u>아가페라이프(주)</u> 는 공제계약을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담보금액을 제공합니다.

담 보 종 류	금 액
출자증권	660,000,000
현 금	1,729,663,935
부 동 산	0
합 계	2,389,663,935

※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025 년 06 월 26일

신청법인 아가페라이프(주)



연 대 보 증 서

상 호 : 아가페라이프(주)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4번길 4, 2층(대연동)

- 1. 상기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 선수금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상기 회사의 공제사고에 의해 발생한 공제조합의 피해금액 일체 (구상금 청구, 법무비용 등)에 대하여 아래의 연대보증인(들)이 연대 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2. 또한, 아래의 연대보증인(들)은 상기 회사의 공제계약 중지·해지 시 상기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이 연대보증인의 개인재산(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제계약서 제8조 연대보증)
- 3. 만약, 연대보증인(들)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며, 전임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연대보증인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단, 후임자가 연대보증인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공동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공제규정 제12조 연대보증)
- 4. 연대보증서 작성일 당시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은 아래와 같으며, 공제사고 발생 시 최대 구상금 청구액 변경에 따라 채무최고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변경된 채무 최고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A. 최대 구상금 청구액 (공제한도액의 50%)	B. 기 납부 담보금액	채무최고액 (A-B)	
5,787,130,500	2,389,663,935	3,397,466,565	

2025 년 06월 26일

연대보증인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155번나길 54-24 (박여동)

성명:이의광

주민등록번호: 670311-1113710

연대보증인 주 소 : (최대주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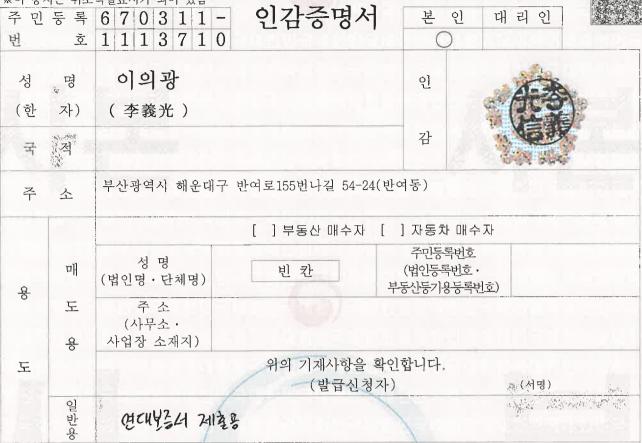
0510 - 1927 - 1

음성변환서비스

신청인: 이의광(생년월일:1967,03.11),

담당자: 정문규 (전화:051-607-4801)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1.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0 표시됩니다.
-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5.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 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메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6. 용도의 매도용란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 칸"으로 표시됩니다.
- 7. 용도의 일반용란에는 '은행제출용', 'OO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 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 주민 등록번호 및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의 성명 등 신청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

00265 인간등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호 No.1927 구 ·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남구 600원 2025.6.26 600원 DY1001

증지발행시각: 11:45:00.376

世]。

57

2025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제1동장

[22012600163204255039003-110569957220106700410] 주소지 증명청 : 반여제1동(23/2)



발급번호: 2025-7661471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cai iax mo	3033110111	OOTL	Houto		
납세자	Name(Name of 이의광 Re		Resident	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lesident(Corporation, 6703 eign) Registration No.		1113710	
Taxpay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155번나길 54-24 (반여동)				동)		
상호 Company Name			. 1	사용목 Ourpose o	선도선	출 용	
과세대상 Tax Objects	2023년 귀속 지방소	노독세 종합소득분(R	전자신고) 외 1건	!			
세목	부과연월	부과유형	과세번호	5 세액		HI :	ח
Tax Items	Tax Year-Month	Tax Pattern	Tax No.	Т	ax Amount	Remar	ks
지방소둑세(종합소득)	2024-05	신고분	305573		₩196,030	과세표준액 : 59,	152,973
소 계	[부산광역시 해윤 합소득분(전자신		속 지방소득세	종	₩196,030	,완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24-06	수시분	000559		₩1,129,890	과세표준액 : 71,	047,780
소 계	[부산광역시 해윤 도소득분 예정결		속 지방소득세	양	₩1,129,890	정리보류	
합계					₩1,325,920)!	

※과세자치단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급담당자: 곽다솜 / 051-310-3124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 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2025년 05월 07일 (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 이외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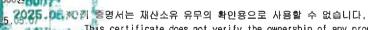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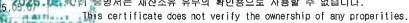
주소(영업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155번나길 54-24 (반여동)

Address(Business Office)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The Chief of Sasang District















확 약 서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 1. 당 사는 청약철회 · 해약 · 행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2. 당 사는 직권해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3. 당 사는 공제조합에서 해약 업무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반서류 제출을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4. 당 사는 공제조합의 해약 업무 등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 이행 시조합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이행하겠습니다.

- 아 래 -

- 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1년간)
- 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해당월의 총 선수금에 대하여 2%의 위약금 부과
- 5. 당 사는 상기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 및 위반 시공제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06 월 26 일

회사명 아가페라이프(주)

대표자 이 의 광

연락처 1644-0400



서 약 서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 1. 당사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 2. 당사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후에도 공제조합에서 당 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사고,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되어 정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정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3. 당사는 공제조합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제업무를 불성실 이행 시 조합의 보정 요구 및 조치 등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겠으며,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조합에서 즉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감수하겠습니다.
- 4. 당사는 상기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 및 위반 시조합의 공제계약 중지·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06 월 26 일

회사명 아가페라이프(주) 대표자 이 의 광 연락처 1644-0400



<u>계 좌 신 고 서</u>

은행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용도
부산은행	기업자유예금	076-13-000752-2	아카페라이프(주)	

본 회사의 CMS 출금계좌를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법인 아가페라이프(주)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